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233 발의연월일: 2021. 12. 31.

발 의 자: 강대식・권영세・金炳旭

김 웅・김은혜・백종헌

유경준 • 유의동 • 윤두현

이용호・조수진・추경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편입취소 될경우, 편입이 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금품수수,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은 최초 편입 당시부터 편입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취소 이전까지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남은 복 무기간만 이행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금품수수,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들의 경우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병역이행과 공정한 채용절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(안 제41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3항 전단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"을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 된 경우: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.
- 2.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 된 경우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. 이 경우 현역병 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 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편입취소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부과에 관한 적

용례)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41조(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 제41조(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 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) 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) ①·② (생 략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 -----다음 각 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--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 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 로 소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--. <후단 삭제>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 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 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. <신 설> 1.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 된 경우: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 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.

<신 설>

2.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 된경우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.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수 있다.